

중국의 오염물배출부과금제도

I. 들어가며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염물 배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적 대응책 마련에 각국이 고심하고 있다. 선진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환경세 제도를 실시하여 오염물 배출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1970년대 개혁·개방 이후 사회·경제발전이 국가의 핵심 정책이 되면서 환경문제는 그다지 주요 이슈가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내 기후체제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오염 방지 및 관리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제도 마련을 준비 중에 있다. 중국은 선진국과는 달리 아직 오염물 배출에 관한 환경세가 독립적인 세제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환경보호법」에 오염물배출부과금제도를 도입해서 오염물 배출

에 대해 관리하고 있을 따름이다. 중국의 오염물 배출부과금제도는 1970년대 도입되어 오수, 대기오염, 소음, 고체폐기물 등 4가지 오염물 배출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중국 오염물배출부과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시대의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왔지만, 입법 및 제도에 있어서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중국의 오염물배출부과금제도의 역사적 발생 배경과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또한 「오염물배출부과금징수사용관리조례(排污费征收使用管理条例)」 및 「오염물배출부과금 징수표준 관리방법(征收排污费暂行办法)」의 규정을 분석하여 중국 오염물 배출부과금제도의 주요 규정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중국 오염물배출부과금제도의 발전과 특징

1. 역사적 발전

오염물배출부과금제도는, 오염방지 조치를 이행하거나 오염으로 야기된 피해를 보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오염자 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오염자부담원칙에 근거한 수질오염배출부과금 제도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1979년 9월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시행)(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试行))」 제18조에서 “국가 표준을 초과하는 오염물 배출에 대하여 그 수량과 농도에 따라 배출비용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중국의 오염물배출부과금 제도가 법률로써 확립되었다. 본 법률의 시행에 따라서 소주(苏州), 항주(杭州), 제남(济南)을 시작으로 1981년 말쯤에는 중국 전역 27개 성(省)과 자치구에서 오염물배출부과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했다.¹⁾

이를 바탕으로 국무원(国务院)은 1982년 2월 「오염물배출부과금임시방법(征收排污费暂行办法)」(이하 「임시방법」이라 함)을 반포하였다. 「임시방법」에 오염물배출부과금 징수의 목적, 징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통일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중국의 오염물배출부과금제도를 정식으

로 확립하였다.²⁾ 하지만 중국의 계획경제체제가 1990년대 초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계획경제체제에 맞춰 제정된 「임시방법」은 시대적인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였다. 이에 국무원은 2003년 1월 「오염물배출부과금징수사용관리조례(排污费征收使用管理条例)」(이하 「조례」라 함)를 공포하고 7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조례」는 납세주체, 부과금 표준, 부과금의 사용관리, 법률책임 등을 규정한다는 면에서 1982년 「임시방법」에 비해서 훨씬 많은 개선을 이루어 오염물배출부과금제도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발전에 더욱 부합할 수 있게 되었다.³⁾

2. 특징과 의의

오염물배출부과금제도는 환경비용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등의 생산비용으로 내재화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억제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중국의 오염물배출부과금제도는 환경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과금 자체의 성질상 국가가 규정한 표준을 초과하는 오염물배출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성 부과금에 속한다. 하지만 다른 행정성 부과금에 비해 조세적 성향이 강하다. 중국 오염물배출부과금제도가 갖는 몇 가지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오염물배출부과금은 강제성을 띤다. 중국의 국가 환경보호 행정주관

1) 韩德培: 《环境保护法教程》, 北京: 中国法律出版社, 2003, 108면.

2) 韩广, 杨兴, 陈维春 外: 《中国环境保护法的基本制度研究》, 北京: 中国法律出版社, 2007, 151면.

3) 韩广 外, 위의 책, 156면.

부서는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표준을 초과하는 오염유발행위에 대해 부과금을 강제로 징수하기 때문에 오염자가 자의로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만약 부과금 납부를 기피할 경우, 행정주관부서는 「조례」와 「행정처벌법(行政处罚法)」에 따라 연체부과금, 벌금을 부과하거나,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⁴⁾

또 중국오염배출부과금제도는 오염방지라는 특정목적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조례」 제5조는 징수된 오염물배출부과금은 일괄적으로 정부재정예산에 편입되어 모두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특별기금으로만 쓰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징수된 부과금에 대해 특정 기업 또는 개인이 역류를 하거나 강제점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별기금으로 편성된 오염물배출부과금은 ‘주요 오염원 제거’, ‘지역 간 오염 확산 방지’, ‘오염방지를 위한 신기술 및 제품개발, 시범 및 응용’, 그리고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오염방지를 위한 항목’을 위한 정부지출에 대한 보조금 또는 대출이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쓰여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염물배출부과금제도는 경제메커니즘을 통해 오염물 배출을 통제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오

염을 유발하는 개인 및 기업에게 직접적인 오염유발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게 함으로써 개인 및 기업들로 하여금 소비 및 생산행위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강한 동기 부여를 한다. 기업들에게 오염유발행위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환경세의 기본 바탕이 되는 ‘피구세이론’에 따른 것인데, 기업들의 환경오염 유발에 대한 외부비용을 생산비용 등으로 내재화시키는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정한 기준 이상의 오염물배출에 대한 부과금의 부과는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의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대한 비용 및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은 오염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생산기술개발 및 보다 친환경적인 생산공정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게 된다. 더욱이 앞서 언급하였듯이, 징수된 오염물배출부과금은 오염물배출 관리 및 기술개발을 위한 보조금으로 전용되므로 기업들의 오염관리의 적극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염물배출부과금제도는 친환경적인 생산을 통해 오염물배출을 감축한다는 환경적인 목적 뿐만 아니라, 자원의 종합적 이용을 통한 자원 및 에너지 이용의 효율을 증대시킨다는 경제적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4)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오염배출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오염자는 현금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가 직권에 의거해 기한 내 납부를 명한다. 기한을 넘어 납부를 거부할 경우, 오염물배출부과금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비준권 있는 인민정부의 기준을 통하여 영업 및 생산중단을 명한다.

「행정처벌법(行政处罚法)」 제51조: 기한을 넘어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당사인에 대해 행정처벌을 내린 행정기관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한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매일 벌금액수의 3%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벌류규정에 따라 강제폐쇄 및 역류된 재산의 경매 또는 예금이체 중지로 벌금을 저당잡는다. (3)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Ⅲ. 중국 오염물배출부과금제도의 주요 내용

1. 부과금 징수에 관한 법률 규정

오염물배출부과금의 징수 대상은 과거 「임시방법」에서는 기업과 기관에 대해서만 부과금을 부과하였다. 2003년 새로 개정된 「조례」에서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오염물배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다. 「조례」 제2조는 “환경에 직접적으로 오염물을 배출한 기업 및 개체공상호(个体工商户)⁵⁾는 본 조례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오염물배출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오염자가 도시의 오수 중앙처리시설에 오수를 배출하고 오수 처리비용을 납부하였을 경우, 부과금을 다시 납부하지 않는다. 오염자가 건립한 공업 고체폐기물의 저장소 및 처리시설이 환경보호 표준에 부합하거나, 원래 있던 공업 고체폐기물 저장소 및 처리시설이 환경보호기준에 맞게 개조되었다면, 그 시설을 설치한 날부터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과금 징수표준에 대해, 「조례」 제11조는 “국무원의 가격주관부문, 재정부문,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 및 경제무역주관부문이 산업화 발전의 요구 및 오염방지의 필요, 그리고 경제·기술

수준 및 오염자의 오염관리 능력에 따라 국가의 오염물배출부과금 표준을 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 명확히 어떤 종류의 오염물에 대해서 부과금을 징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부과금에 대한 징수표준은 2003년 공포된 「오염물배출부과금 징수표준 관리방법(排污非征收标准管理办法)」(이하 「관리방법」이라 함)의 규정에 따른다. 「관리방법」 제3조에 따르면, “오염물배출물부과금은 오수(污水), 대기오염물, 고체폐기물 및 위험폐기물, 그리고 기준치 이상의 소음의 배출에 대해서 부과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오수배출부과금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배출된 오염물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산정한다. 국가 또는 지방의 오염물 배출기준의 초과에 대해서는 배출된 오염물 종류 및 수량, 그리고 「관리방법」 규정의 부과금표준에 따라 산정된 부과금액의 배만큼 표준초과부과금을 징수한다(「관리방법」 제3조 제1항). 「관리방법」 부칙에 규정된 ‘배출부과금징수표준과 산정방법’에 따르면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오염물질을 65개 종으로 분류하고 각 오염물질의 매 오염당량가(当量直)⁶⁾당 징수표준은 0.7위안(元)이 된다. 배출부과금을 산정할 때는 각 오염물질의 오염당량가가 큰 수부터 작은 수순으로 배열한 다음 가장 큰 3종류의 오염물질에 대한 오염당량

5) 여기서 개체공상호는 영업능력을 가진 자로서, 「개체공상호 조례(个体工商户条例)」의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 부처에 등기하고, 공상업에 종사하는 공민(公民)을 말한다(「개체공상호 조례」 제2조 제1항).

6) 당량(当量)은 화학용어로, 간단히 설명하면, 수소원자 1개와 치환될 수 있는 양을 말하는데, 화학반응이 일어날 때 항상 같은 당량 비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염정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다.

가 수를 합한 것에 0.7을 곱한다. 이때, 동일한 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된 오염물은 3가지 이상을 초과하여 선택할 수 없다. 만약, 국가 및 지방정부가 규정하는 배출 표준을 초과한 경우는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부과금액의 배를 표준초과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한다.

두 번째, 대기오염물배출부과금은 배출된 오염물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산정되며, 자동차, 비행기, 선박 등의 유동오염원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대기오염물배출부과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관리방법」 제3조 제2항). 본 「관리방법」 부칙은 44개 종류의 대기오염물질을 선정하여 각 오염물질에 대해 오염당량가당 징수표준은 0.6위안(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기오염물배출부과금도 오수배출부과금과 마찬가지로 상위 3가지 오염물만 선택하여 그에 대한 부과금을 산정한다.

세 번째, 「관리방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공업고체폐기물 저장소 및 처리시설을 설비하지 않았거나 환경보호 기준 미달인 경우, 배출된 오염

물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고체폐기물배출 부과금을 1회 징수한다. 고체폐기물 매 톤당 징수 표준은 제련 가루(冶炼渣) 25위안, 연탄재 가루(粉煤灰) 30위안, 용광로 침전물(炉渣) 25위안, 석탄 맥석(煤矸石) 5위안, 폐석(尾矿) 15위안, 기타 찌꺼기 25위안이 된다. 또한 매립방식을 통해 위험폐기물 처리 시 관련 국가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위험폐기물배출부과금 징수에 대한 표준은 매 톤당 1,000위안이다.

네 번째, 「관리방법」 제3조 제4항은 국가가 정한 환경소음배출 표준을 초과하고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 업무, 학습을 방해하는 소음 유발자에 대해 기준을 초과하는 데시벨 수에 따라서 소음초과배출부과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준치를 초과한 데시벨은 1부터 16 이상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부과금 표준은 아래의 「관리방법」 부칙 [표-6]에 제시되어 있다. 단, 자동차, 비행기, 선박 등 유동오염원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기준치 초과 소음배출부과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부칙 [표-6] 기준치 초과 소음에 대한 부과금 표준

초과데시벨수	1	2	3	4	5	6	7	8
부과금표준	350	440	550	700	880	1100	1400	1760
초과데시벨수	9	10	11	12	13	14	15	16~16 이상
부과금표준	2200	2800	5320	4400	5600	7040	8800	11200

2. 부과금 사용에 관한 법률 규정

「조례」 제18조는 징수된 부과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오염배출부과금은 재정 예산에 편입되어 환경보호를 위한 전용자금으로 사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4가지 핵심 오염관리사업에 대한 보조금 및 대출이자 보조를 위해 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용자금은 주요 오염물배출 방지를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된다. 본 사업은 기술장비 및 가공기술이 환경보호 및 기타 친환경생산 요구에 부합하는 주요 업종 및 주요 오염원 퇴치사업을 포함한다.⁷⁾ 다음으로, 지역 간 오염확산 방지사업을 위한 전용자금은 주로 여러 지역에 걸쳐 발생하는 오염의 관리 및 친환경적인 생산을 위한 사업에 이용된다. 세 번째로, 오염방지를 위한 신기술 및 신생산기술의 보급 및 확대를 위한 전용자금으로 주로 오염방지를 위한 신기술장비 및 신생산기술의 연구 및 개발에 사용되며, 자원의 종합적인 이용 효율을 증대시키고 오염물 생산량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생산기술 및 방법을 보급하는 데 이용된다.⁸⁾ 마지막으로 국무원이 규정하는 기타 오염방지 사업에 이용된다.

징수부과금 사용에 관한 관리에 대해 「조례」

제19조는 현급(县级) 이상의 인민정부 부문,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문이 환경보호를 위한 전용자금의 사용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재정부문과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문은 매 분기마다 본 급 인민정부 및 상급재정 부분과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문에 본 행정구역 내 환경보호를 위한 모든 자금의 사용 및 관리상황을 보고하며, 회계기관은 그에 대한 회계감독을 한다.⁹⁾

IV. 중국 오염물배출부과금제도의 문제점

중국은 1982년 오염물배출부과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오염물 배출자들로 하여금 오염물 배출을 억제하도록 하고 징수된 부과금을 다시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쓰도록 하여 일정정도 중국의 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¹⁰⁾ 하지만, 중국의 현행 오염물배출부과금제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어 입법 및 제도상의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 환경보호기능을 발휘함에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7) 李慧玲: 《环境税费法律制度研究》, 北京: 中国法制出版社, 2007, 121면.

8) 李慧玲, 위의 책, 121면.

9) 李慧玲, 위의 책, 122면.

10) Task Force Team, "Economic Instruments for Energy Efficiency and the Environment", China Council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CCICED) Policy Research Report, 2009, p 67.

1. 입법적 문제점

우선, 중국의 현행 오염물배출부과금제도의 부과금 표준 및 징수 범위가 불합리적이다. 일반적인 경제 이론의 관점에서, 부과금 표준이 오염방지 처리비용, 즉 환경비용보다 낮을 경우,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부과금을 내는 것이 오염방지 처리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보다 비용적인 면에서 이익이기 때문에 오염자는 적극적으로 오염을 통제하기보다는 차라리 오염물배출 부과금을 내려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오염물배출부과금의 표준은 일반적으로 경제효율을 실현할 정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다.¹¹⁾ 현재 오염물배출 기업들이 납부하고 있는 표준 초과 오염물배출부과금은 오염관리비용의 10~15%밖에 되지 않는다.¹²⁾ 뿐만 아니라 징수 범위에 있어서 현행 부과금제도는 부과금 납부 주체가 주로 대도시의 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대량의 소형기업이나 비기업 오염배출 주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¹³⁾ 또한, 현재 100여 종이 넘는 오염행위에 대해 부과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악취, 생활쓰레기 및 오수, 전자파 방출 등은 부과 대상이 아니며, 자동차, 비행기, 선박 등의 이동오염원은 소음 초과 및 대기오염물 초과에 대

한 오염물배출부과금 징수 대상에서 잠정적으로 제외되어 있는 상태이다.

다음으로 현행 오염배출부과금 제도의 징수기준이 불합리적이다. 현행 부과금 제도는 기준초과 오염물배출부과금으로써 국가 및 지방정부의 배출기준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 징수하기 때문에 기준에 다 다르거나 표준보다 낮은 경우는 오염물을 배출해도 부과금을 징수하지 못한다. 심지어는 배출된 오염원 중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오염물질의 대부분은 이미 그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 용량을 초과할 정도이다.¹⁴⁾ 그렇다면 하더라도 낮은 징수기준으로 인해 법적 규제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단지 기준 초과에 대해서만 부과금을 징수하는 것은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보장이 전혀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현행 부과금제도는 주로 오염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배출량은 부과기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배출량이 아무리 많아도 오염의 농도가 기준농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부과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부과금을 산정할 때, 배출된 오염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종류의 유해물질 중 가장 많은 상위 오염물질의 양에 대해서만 부과금을 산정

11) 贾康, 王桂娟, “改进完善我国环境税制的探讨”, 《税务研究》2000年 第9期, 45면; CCICED, 앞의 논문, 67면 참고.

12) 温尚杰, 何亮亮, “我国环境税收制度的现状及对策研究”, 《广西政法管理干部学院学报》, 2006年 3月 第21卷第2期, 32면.

13) 温尚杰 外, 위의 논문, 33면; 曹明德, 王京星, “我国环境税收制度的价值定位及改革方向”, 《法学评论》, 2006年 第1期总第135期, 92면 참고.

14) 温尚杰 外, 위의 논문, 33면.

한다. 따라서 오염물 배출 기업들이 부과금 부과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만 관리하게 하여 전반적인 오염물 감축에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례」 및 「관리방법」이 정식으로 실시된 이후, 환경관리 경비에 있어서 심각한 예산 부족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본 규정에 따라 징수된 오염물배출부과금은 모두 재정예산에 포함되고, 환경부문 자체의 설비 등에 사용될 수 없게 되었다.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인해 동급 지방정부의 재정, 특히 최하급 지방정부의 재정으로는 환경부문이 요구하는 환경보호사업비를 마련하기가 어려워 현지의 환경보호를 위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힘들게 되었다.¹⁵⁾

2. 제도적 문제점

중국의 오염물배출부과금제도는 본질적으로 행정성 부과금에 속하므로 법률적 효력 및 강제성이 약하다. 부과금을 징수하는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문 자체가 강제집행권이 약하기 때문에 기껏해야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¹⁶⁾ 예를 들어,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

이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하여 오염물배출부과금의 납부를 통지했는데도, 오염물배출 기업이 부과금 납부를 거절하고, 행정주관부문이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2년 내에 행정처벌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기한이 지나 다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된다.¹⁷⁾ 또한 다시 9개월이 지나고 나면 강제집행기간도 지나기 때문에 다시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¹⁸⁾ 이는 결국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부과금을 추징할 수 있는 권한이 2년으로 제한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오염물배출부과금제도는 행정주관부문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기 쉽다.¹⁹⁾ 이는 오염배출자가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부과금의 납부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여지를 남기게 되고,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쓰게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과금 납부자와 징수자 사이에 종종 모종의 합의가 이뤄지기도 한다.²⁰⁾ 이는 결국 환경보호를 위한 자금의 조성을 어렵게 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오염물배출에 대한 부과금 부여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소비

15) 李慧玲, “我国排污收费制度及立法评析”, 《中南林业科技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07年 7月 第1卷 第2期, 62면.

16) 李慧玲, 위의 논문, 63면.

17)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29조는 “위법행위가 2년 내 발견되지 않으면, 다시 행정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 李慧玲, 앞의 논문, 63면.

19) 중국 오염물배출부과금제도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관한 내용은, 干振英, 任魏, 翟莉艳, “我国现行排污收费制度的道德风险”, 《中国物价》, 2000年 6月, 11~13면 참고.

20) CCICED, 앞의 논문, 68면.

및 생산행위를 바꾸려는 목적을 이루기 더욱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V. 맺으며

중국의 오염물배출부과금제도는 비교적 빨리 도입되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법 및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환경보호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특히 선진국과 같이 환경세제 자체가 독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서 부과금제도에 의존해 오염물배출을 통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중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국내외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오염물배출부과금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듯하다.

윤 성 혜

(해외입법조사위원, 중국정법대학교)